



서민층 LPG가스시설 무료개선 사업 시행

LPG호스는 노후되거나 파손으로 사고우려가 있어
안전한 **금속배관**으로 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

- | 사업기간 | 2013. 1 ~ 2013. 12
- | 사업대상 | LPG가스 호스설치 주택(서민층)
- | 사업내용 |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무료 설치
- | 문의처 | 시·군·구 가스담당부서 또는
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·지사

※ 모든 LPG가스 사용주택은 2015. 12. 31일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.
(미 이행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2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)



산업통상자원부

· 지방자치단체



한국가스안전공사

